2026년 신정도시마을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6. 9. 23.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목 차

1) 공급개요 2p

2) 신청자격 4p

3) 입주자 선정방법 8p

4) 주택 사전공개 13p

5) 신청접수 13p

6) 심사서류 제출안내 16p

7) 소명대상자 발표 21p

8) 동호추첨 및 당첨자발표 22p

9)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23p

10) 유의사항 24p

11) 임대신청문의 26p

<별표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28p

<별표2>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33p

<별표3> 신정도시마을 입주자 유의사항 34p

<별표4> 우편접수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36p

신정도시마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고의 각 주택들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 접수시 모두 취소 처리 되므로 반드시 한 주택에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금회 공급호수 : (전용39m^2) 13호

단지	평면 유형 (전용)	주택형	금회 공급호수		세대별 계약면적(㎡)					난방
			일반공급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계	
합 계			13							
신정도시마을	39㎡	39 (일반형)	6	2	39.37	23.85	6.19	36.19	105.6	개별난방
					39.45	23.84	6.2	36.26	105.75	
					39.61	22.40	6.22	36.41	104.64	
					39.64	23.08	6.23	36.43	105.38	
					39.69	23.1	6.24	36.48	105.51	
		0039 (복층형)	4	1	39.12	23.21	6.15	35.96	104.44	
					39.22	24.18	6.16	36.05	105.61	
					39.23	23.36	6.16	36.06	104.81	
					39.63	24.17	6.23	36.43	106.46	

※ 세대별 계약면적은 유형별 대표면적임
※ 주택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임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이며 복도 및 발코니 창호는 일괄 시공되어 있습니다.

○ **금회 공고 모집세대 중 복층형구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타입별(일반형, 복층형)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동호 배정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고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동호 변경 등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배정받은 세대의 경우 결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등의 면적입니다.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발코니확장형 창호로 인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천장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빨래건조, 가습기 등 사용 시에는 수시로 창호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별도의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공항,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랍니다.

▣ 주택위치

위 치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가길 6(신정동1289-2)
교통편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 하차 4번출구에서 신정네거리역 교차로방향 마을버스 양천03 탑승 후 한성교회, 백암고 정류장 하차 신정도시마을주택까지 도보1분 총 15분 소요
약 도	

※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지	신청 유형 (전용)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해당동	건물 최고층수	총 세대수	위치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신정도시마을	**39㎡**	44,000	4,400	39,600	335,000	1개동	8층	92세대	양천구 신정동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 내 일반형 및 복층형 구조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 면적은 상이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합니다.**

▣ 임대금액 전환안내

단지	신청 유형 (전용)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신정도시마을	39㎡	44,000	335,000	(+)	80,000	134,000
				(-)	17,600	390,000

○ 신정도시마을주택(임대)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관할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전환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공급 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사전 주택공개	인터넷 청약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	소명심사 대상자발표
26. 9. 23. (수)	26. 9. 29.(화)~ 9. 30.(수)	26. 10. 6.(화) ~10. 8.(목)	26. 10. 19. (월)	`26.10.22.(목)~ 10.26.(월)	`26.12월

▶ 당첨자 발표: 26. 12. 28.(월) ▶ 계약기간: `27. 1. 11.(월) ~ 1. 13.(수)

※ 입주예정기간은 2027. 2. 1.(월)~2027. 4. 2.(금)입니다.

※ 상기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재계약(관련 법령이 정하는 임대 의무기간 내)]

2 신청자격

▣ 공통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9. 2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단, ①또는 ②의 자녀 및 형제자매의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용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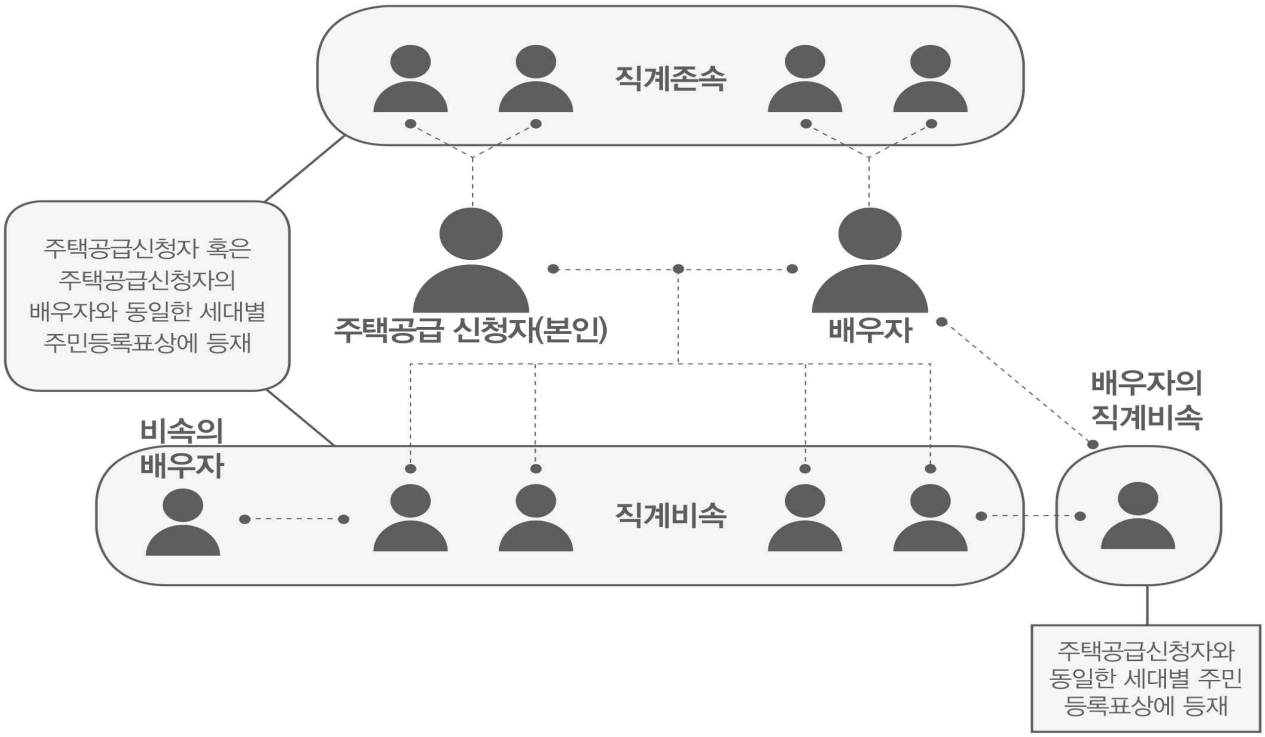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배우자가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 이하인 자**

※ 소득기준 가산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가산항목 및 비율
  - · 1인 가구 : 20%p 가산
  - · 2인 가구 : 10%p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의 유무**에 따른 가산항목 및 비율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10%p 가산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 20%p 가산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
  -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 소득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참고]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70%	80%	90%	100%	110%
1인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4,957,372
2인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3인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4인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5인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6인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참고사항	※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태아(수)는 가구 원수에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이나 출생자녀 유무에 따른 가산 비율은 신청자 본인의 가산기준에 맞는 금액을 따로 산정하여야 함 ※ 소득항목별 세부 조사항목은 공고문 [별표1] 참고				

○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단위: 만원)

구분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기본	**34,500**	**4,542**
10%p 가산	**37,900**	**4,996**
20%p 가산	**41,300**	**5,451**

※ 자산기준 가산요건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의 유무**에 따른 가산항목 및 비율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10%p 가산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 20%p 가산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
  -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 자산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신청인(계약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합니다.(외국인 불가)**

○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과 우편 청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 명 중 1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는 1세대로 간주하여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입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가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자격요건 상실 시 (무주택, 서울시 거주, 소득 및 자산 요건 등)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table>
<tr><th>구 분</th><th>입 주 자 선 정 방 법</th></tr>
<tr><td>입주자
선정순위</td><td>

1. 아래 순위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금액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9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1. 선순위(월평균소득 70% 이하) 소득기준

<table>
<tr><th>가구원수</th><th>1인가구
(+20%p)</th><th>2인가구
(+10%p)</th><th>3인가구</th><th>4인가구</th><th>5인가구</th><th>6인가구</th></tr>
<tr><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td><td>3,432,027</td><td>4,693,016</td><td>5,717,900</td><td>6,161,541</td><td>6,528,890</td><td>6,934,384</td></tr>
<tr><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td><td>-</td><td>5,279,643</td><td>6,534,743</td><td>7,041,762</td><td>7,461,588</td><td>7,925,010</td></tr>
<tr><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td><td>-</td><td>-</td><td>7,351,586</td><td>7,921,982</td><td>8,394,287</td><td>8,915,637</td></tr>
</table>

1-2. 후순위(월평균소득 90% 이하) 소득기준

<table>
<tr><th>가구원수</th><th>1인가구
(+20%p)</th><th>2인가구
(+10%p)</th><th>3인가구</th><th>4인가구</th><th>5인가구</th><th>6인가구</th></tr>
<tr><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td><td>4,194,699</td><td>5,866,270</td><td>7,351,586</td><td>7,921,982</td><td>8,394,287</td><td>8,915,637</td></tr>
<tr><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td><td>-</td><td>6,452,897</td><td>8,168,429</td><td>8,802,202</td><td>8,802,202</td><td>9,906,263</td></tr>
<tr><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td><td>-</td><td>-</td><td>8,985,272</td><td>9,682,422</td><td>10,259,684</td><td>10,896,889</td></tr>
</table>

※ 7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6인가구 소득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소득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된 금액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td></tr>
<tr><td>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td><td>아래의 입주자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여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으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함</td></tr>
</table>

[입주자 선정 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 나이(만나이 기준)	60세이상	40세이상 60세미만	20세이상 40세미만
	(기준) 출생 연월일		
	1966.09.23. (당일포함)이전	1966.09.24.(당일포함) ~1986.09.23.(당일포함)	1986.09.24.(당일포함) ~2006.09.23.(당일포함)
②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 19세 이후)	5년이상	3년이상~5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기준) 서울시 최종전입일		
	2021.09.23. (당일포함) 이전	2021.09.24.(당일포함) ~2023.09.23.(당일포함)	2023.09.24.(당일포함) ~2025.09.23.(당일포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24회 이상	12회이상~24회미만	6회이상~12회미만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중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3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점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⑥ 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1~2인 가구로 거주하는 자(계약자)로서 퇴거를 희망하는 자 : 3점

⑦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자 : 3점 (아래 항목중 1개 항목만 인정)

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으로 등록 된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단, 보훈청에서 수권자로 인정하는 자에 한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또는 동법 7조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계약자 본인만 해당)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거주불명등록 등)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서로 판단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제조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업태상의 제조업으로 확인함.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그 제조업체 직장가입자에 한함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신청자격	위 "2. 신청자격"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심사 시 임신 중인 자녀수는 세대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로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 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 수가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신청자격 여부 확인(임신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혼인기간 산정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입주자 선정순위

1. 아래 순위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의 소득금액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1,2,3순위)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90%이하인 세대(1,2,3순위)에게 공급

1-1. 선순위(월평균소득 70% 이하) 소득기준

가구원수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4,693,016**	**5,717,900**	**6,161,541**	**6,528,890**	**6,934,384**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5,279,643**	**6,534,743**	**7,041,762**	**7,461,588**	**7,925,01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7,351,586**	**7,921,982**	**8,394,287**	**8,915,637**

1-2. 후순위(월평균소득 90% 이하) 소득기준

가구원수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5,866,270**	**7,351,586**	**7,921,982**	**8,394,287**	**8,915,637**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6,452,897**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8,985,272**	**9,682,422**	**10,259,684**	**10,896,889**

※ 소득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된 금액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7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6인가구 소득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6. 9. 23.)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경우 ② 2순위 : 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가 있는 신혼부부 나)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다)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태아포함) ③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1순위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2순위 및 3순위는 아래의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함.
유의사항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재선정하며,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수[1] (태아 포함)	3명이상	2명	1명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이후)[2]	3년이상	1년이상 3년미만	1년 미만
	2023.09.23. (당일포함) 이전	2023.09.24.(당일포함) ~2025.09.23.(당일포함)	2025.09.24. (당일포함)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이상	12회 이상 24회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현 배우자와 혼인기간[3] (신혼부부만 적용)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의 나이[4]	만2세 이하	만3세 또는 만4세	만5세 또는 만6세

1) 자녀의 수는 미성년자(만19세 미만)에 한하며,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를 인정하되 태아수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 자녀의 수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이·재혼인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2)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 성년(만19세이상)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거소불명등록 등)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3)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4) 다자녀의 경우 가장 나이 어린 자녀 기준(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가장 어린 자녀 기준 적용)

※ 한부모가족 신청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자녀의 수'는 태아 수만큼 가점이 인정되나 자녀의 나이는 출산 이후 등본 등재 시 적용되므로 가점을 받을 수 없음.

4 주택 사전공개

▣ **공개기간: 2026. 9. 29.(화) ~ 2026. 9. 30.(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공개방법: 현장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에 방문 전 연락하여 신청자가 자유롭게 확인**

▣ **주택위치: 공고문 3p 위치 및 약도 참고**

▣ **문의번호: ☎ 02-2608-0123 (신정도시마을 관리사무소)**

5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 신청접수 일정**

신청자격별 신청자격	신청접수 일정	신청방법
· 우선공급(소득 70%이하, 90%이하) · 일반공급(소득 70%이하)	2026. 10. 6.(화) 10:00 ~ 2026. 10. 7.(수) 17:00	인터넷청약 (www.i-sh.co.kr)
· 일반공급(소득 90%이하)	2026. 10. 8.(목) 10:00~17:00	

※ 해당 신청자격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무효 처리됩니다.

※ 선순위[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일반공급)]가 공급세대의 10배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월평균소득의 70%초과 90%이하(일반공급)]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90%이하(일반공급)] 접수여부는 2026. 10. 8.(목) 오전 9:0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신청접수 일정

본 모집공고는 인터넷신청이 원칙이며, 현장(대면)접수는 불가합니다. 단, ①일반공급 선순위자(소득 70%이하) 중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 및 ②우선공급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에 한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를 진행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가 우편접수 할 시 접수받지 않으며 서류는 폐기처리함

인터넷 신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우편 청약	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6.(화) ※ 2026. 10. 6.(화) 도착분까지만 유효
	방법	□ 등기우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접속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등기우편으로 송부
	주소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신정도시마을주택 담당자 앞
	유의 사항	□ 등기우편 외의 방법(택배, 일반우편 포함)으로 접수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소득기준, 신청주택 유형 등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의 단순접수 등 신청대행만 진행하므로 신청서상 정보 오기재 등으로 인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 우편 제출 전 최종검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기재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으로 우편접수하실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상세 안내

"24시간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 각 순위별 최종청약일 마감시간 (17:00)까지만 운영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대상자가 결정되며, 제출 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 〔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자동차),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유무, 서울시 계속거주 등〕, 서류심사시 해당 가점이 차감되거나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건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건을 PC로 취소 후 재청약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 및 재신청은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마감일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오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신청완료 후 본인의 기입한 내용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형평성 상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신청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드로이드 OS 정책 변경에 따라 모바일 청약시 변경 사항이 있으니, 청약 홈페이지 팝업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 청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발급/소지

> **※ 신청순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해당 주택 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청약서 최종확인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종류 : 네이버,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신한, 뱅크샐러드, 하나

◑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은 신청접수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기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신청마감 일시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간 : 2026. 10. 6.(화) 10:00 ~ 10. 7.(수) 17:00 [선순위]
2026. 10. 8.(목) 10:00~17:00 [후순위]

- 선순위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의 10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2026. 10. 8.(목)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후순위 청약접수 여부는 1순위 청약접수 종료 후 2026. 10. 8.(목) 오전 9:00에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6 심사서류 제출안내

○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상위 10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 제출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유의바랍니다.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 소득 입증의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에서 탈락됩니다.

○ **서류심사 탈락자 또는 미계약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중 일부를 추가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 내 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최종 선정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6. 10. 19.(월)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명단 게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ARS(1600-3456)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심사서류 제출

- **기 간 : 2026. 10. 22.(목) ~ 2026. 10. 26.(월)**
- **장 소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신정도시마을주택 담당자 앞**
- **방 법 : 제출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 2026. 10. 26.(월) 소인분, 2026. 10. 28.(수) 도착분 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 9. 23.)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존 발급분 제출가능)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밝혀질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공통 제출서류

□ 신청자 전원 제출

제출 서류	내 용	발 급
심사서류 제출신청서	·제출서류 목록에 해당여부 체크하여 제출(공사양식)	-붙임양식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배우자 등본 분리 시 분리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가 표시되게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주민센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이력)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가 표시되게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주민센터
금융정보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에 **성명 정자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인정.	-붙임양식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성명 정자로 작성)**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붙임양식

가점대상자 제출서류

□ **본인의 신청 가점 자격에 따른 서류 제출(해당자만 제출)**

가점 대상자	제출서류 및 내용	발 급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제조업체 가입분) • 재직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기록구분 전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불가시 점수 인정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해당직장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1357) •등기소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 공제부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원본지참)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공공임대주택에 1~2인 가구로 거주하는 자(계약자)로서 퇴거를 희망하는 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특수임무수행자(유족)확인원 등	•국가보훈처 각 보훈지청

가점 대상자	제출서류 및 내용	발 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구청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추천서(자치구확인), •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의 장 •해당구청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책정기간 기재)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계약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면 사본	•본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제출서류

□ **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및 내용	발 급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주민센터
(자녀)기본증명서	• 임신 중인 경우에는 임신진단서(원본)로 갈음.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주민센터

예비신혼부부 제출서류

□ **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및 내용	발 급
혼인관계증명서	• 대표신청자 기준으로 발급(※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대표신청자가 공고일 기준 미혼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미혼여부 확인용) ※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을 입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 무효	•주민센터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	• 공사양식	•붙임양식
신분증 사본	• 당사자 2인(대표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본인
위임장	• 대표신청자에게 청약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자 : 예비배우자, - 수임자 : 대표신청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동일하게 서명하여 제출	•붙임양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의 본인발급분	•주민센터

해당자 제출서류

□ **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및 내용	발 급
임신진단서	• 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 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 불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국내 거소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 유의사항

○ **임대주택 공급계약체결이후 당첨자는 입주 전까지 아래의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할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임신주수 기재분)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을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됩니다.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주택관리번호 : 2026-000473

7 소명심사대상자 발표

▣ 소명심사대상자 발표

○ **소명기간 : 2026년 12월 중**

○ 소명방법 : 소득 및 자산 소명대상자 개별 통보 및 소명자료 등기우편 제출

8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타입별(일반형, 복층형)로 신청접수하여 타입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 **일 시 : 2026. 12. 28.(월) 17: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명단 게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당첨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ARS(1600-3456) 당첨자 조회**

※ 당첨자 발표 개시 전 조회 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 반드시 당첨자 발표 이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ARS조회 시 반드시 '당첨자'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대상자'로 조회 시 조회되지 않음)

※ 당첨자 발표의 경우 홈페이지와 SMS(미당첨의 경우 발송하지 않음)로 발표하므로, SMS 미확인 또는 통신사 장애로 인해 SMS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당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5배수내의 예비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로 발생한 세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예비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2027. 12. 27.(월)**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합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변경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9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 **계약일시 : 2027. 1. 11.(월) ~ 2027. 1. 13.(수)**

10: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1. 13.(수) 하루만 방문계약 진행.

▣ **방문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 **(방문계약시) 구비서류**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입금확인증**

② **신분증(본인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위조방지 처리된 신 운전면허증)**

③ **본인도장(본인계약시 서명가능)**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를 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추가적인 제출서류)

- 제3자 신청시(직계가족 및 배우자)
  :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신청시(직계가족 및 배우자 제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1통,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및 인감도장
  ⇨ 위임장 양식은 당첨자 발표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발송예정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임대주택 공급계약체결 이후 당첨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아래의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할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임신주수 기재분)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을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태아 수 감소로 당첨 최저점수 미만인 경우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서울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계약금을 납부했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취소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해당순위 신청접수일이 아닌 날짜에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등(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

10 유의사항

○ 해당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아니한 접수는 신청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인한 공가 세대이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총자산액 및 자동차보유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 부양가족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무주택기간, 소득입증, 심사서류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발표이전에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택에 방문하여 시설물 등을 점검하실 수 있으며, 임대주택 세대내 시설, 설비의 상태 사전설명 및 점검 확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액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함(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기준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SH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발코니창호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벽 및 천장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수시로 창호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임대신청 문의

▣ **대표전화 . 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ARS(1600-3456)조회

※ 유선(전화)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 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

<별표1>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 자산항목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구분		자산 기준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자동차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 (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u>자동차가액 기준</u>을 충족하여야 함**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일 기준의 액면가액

구분		자산 기준
		• 연금저축: 조사일 기준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이 외 개인 간 사채 인정불가)**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서류심사대상자발표 심사서류 제출 ⇨ 소득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소득심사, 소명대상 통보 ⇨ 소명 접수 ⇨ 소명사항 반영여부 결정 ⇨ 당첨자 발표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주택,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②근로복지공단 자료 ③국민연금공단 자료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2개 이상 소득 중복	반영(높은 금액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 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 시 반영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반영함.

<별표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분양권 등 신규 계약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
   - 분양권 등 매수한 경우 :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잔금지급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

     ※ 준공 후 등기처리 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S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명인정 불가하며, 당시 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다면 소명이 불가)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별표3) 신정도시마을 입주자 유의사항

◆ 단위세대 평면은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의 오차 및 걸레받이, 마감재 등으로 인하여 가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 배치 계획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북동측에 접하여 있는 백암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행사 및 체육활동 등으로 소음 및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북서방향으로 2차선 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서측에 접하여 상가건물의 창호가 있어 서측편(주출입구)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로 인하여 야간조명 및 소음으로 북서측에 위치한 저층세대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심지 내에 위치하여 동서남북으로 일부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및 조망권 제한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북서측 주진입 차로가 협소하고 인근에 장수초등학교, 백암고등학교 후문, 금옥여자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등하교 및 출퇴근 시 다수의 차량 등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 혼잡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경계와 연접하여 담장이 위치하고 있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에 불리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으로 차량이 진입하여 전조등 불빛반사 및 소음등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 산책로, 상가, 학교 등에서 실내가 투시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보육시설,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조경식재 등이 있으며 이로 하여 인접 세대에 야간 조명, 소음, 옥외 및 옥상공간으로부터 세대 내부 투시, 입면이 다양하게 교차되어 위층 세대에서 대각선에 위치한 아래층 세대의 내부투시 등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 옥외공간에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위치하고 있어 미관저하, 소음, 악취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급자료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썬큰 등이 설치되는 주변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침해, 차량의 진·출입시 발생되는 전조등, 경고음 및 공회전 등의 소음, 매연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지상부에 돌출한 지하층 환기시설 D.A(Dry Area:지하주차장의 채광, 통풍, 방습을 위해 만든 구조물)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창호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발코니창호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빨래건조,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등 습기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에는 입주시 배부되는 관리매뉴얼(시설물안내서)을 참조하여 수시로 창호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 겨울철 입주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저하될 수 있음.

◆ 보육시설 상부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어 상부에 위치한 동의 일부세대에 소음, 시각적 프라이버시 침해, 냄새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및 썬큰 등의 상부에 설치된 캐노피에 인접한 세대는 비에 의한 소음발생 및 캐노피의 높이로 인하여 조망에 불리할 수 있음.

◆ 에코샤프트 시스템이 옥상에 설치되어 4층이하 각층 및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엘레베이터홀 옆의 공간에 빛을 유입하거나 환기하기 위해 유리로 설치되어 있으며,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작동이 되지않을 수 있음.

◆ 외기와 접해있는 발코니의 벽체 중 일부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어 충격시 파손에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함.

◆ 단위세대 내에 싱크하부장, 신발장 하부에 온수 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1,2층 세대 중 필로티에 인접하여 생활소음 등 사생활이 침해 될 수 있음.

◆ 간선도로에 접하여 있는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천정은 복합단열재로 시공되며, 기준층 발코니 천정 마감과 다름.

◆ 단위세대 상하부에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방재센터, MDF실,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실내어린이놀이터, 탁구장, 피트니스센터등이 인접한 세대(상하좌우)의 경우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 입주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될 수 있음.

◆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 및 에코샤프트 시스템이 설치된 조형물이 철물 및 반사용 재료이므로 우수 시 소음 및 햇빛, 야간조명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테라스형 일부세대 및 공용테라스 부위, 개인용 텃밭이 있는 일부 세대등은 외부인의 침입에 따른 방범 우려 및 배수관이 막혀 테라스의 물이 넘쳐 세대내부로 들어올 수 있으니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공용부위에 설치된 공용공간의 활용 및 시설물의 사용은 관리사무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함.

◆ 입면이 교차된 세대 등과 인접하거나 조경식재, 개인용 텃밭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할 수 있음.

<별표4>

우편접수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 작성방법**
- ① **신정도시마을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부** (일반공급, 우선공급 신청용 중 택1)
-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공고문 p.46)** (자필서명 필요)

■ **접수기간** : 2026. 10. 2.(금) ~ 10. 6.(화), **10월 6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등기우편 외 방문접수/일반우편/택배/착불배송 등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출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신정도시마을 담당자

○ 우편접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공사에서 **단순 인터넷 입력대행**하는 형태로,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신청서 내용누락 및 오기재 등의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선순위자(소득 70%이하) 중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 및 ②우선공급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 등에 한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를 진행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서에 인터넷 청약대행 시 필수 입력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하여 **결격처리되므로,** 등기우편 제출 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소득체크 등)

○ 첨부된 신청서 예시자료 및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착오기재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이후 신청유형에 대한 변경이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오기재시 납입인정회차가 0회처리** 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배송 중 분실, 도착지연 등을 대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발송한 **등기우편의 등기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

일반공급 신청용

신정도시마을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 신청유형 : 일반공급 (일반형 39㎡ ■ 복층형 39㎡ □)

2. 세대소득 : 월평균소득 70% 이하 ■

※ 우편접수는 일반공급 선순위자(소득 70%이하) 및 우선공급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이상) 만 신청 가능

3. 가구원수 : 신청자 본인 및 태아를 제외한 가구원수 1 명, 태아의 수 0 명

4. 신청자 인적사항 분리배우자도 오른쪽 체크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없음 □
본인	홍길동	9	8	7	6	5	4	–	1	2	3	4	5	6	7	외국인 배우자 □
배우자	김을동	9	8	1	2	3	4	–	2	0	1	2	3	4	5	분리 배우자 □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한 사람 신청불가(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인 경우등)

5.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 기준으로 작성

① 서울시거주기간(서울시 연속거주 시작일자, 만19세 이후) 2001 년 1 월 1 일
② 신청인이 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1~2인 가구로 거주하는 자(계약자)로서 퇴거를 희망하는자 □
③ 청약저축 횟수___32___ 회(공고일전 청약납입회차만 인정) (은행명 : 우리은행)
④ 신청인이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중 6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
⑥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
⑦ 사회취약계층 (공고문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 참조, 두개이상 해당해도 3점) (자격 :(한가지만 기재) ①) ■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3, 한부모가족 4.국가유공자등 5.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 7.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이외 수급자 (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8. 영구임대주택거주자중 청약가입자

6.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도로명주소 기재

7. 연락가능 전화번호 : (010) 1234 - 5678

8. 이메일주소 : sh1234 @ l-sh.co.kr

신청인 본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 소유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 년 9 월 23 일 신청인 : 홍길동 (인장 또는 서명) 반드시 자필서명

일반공급 신청용

신정도시마을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 신청유형 : 일반공급 (일반형 39㎡ □ 복층형 39㎡ □)

2. 세대소득 : 월평균소득 70% 이하 □

※ 우편접수는 일반공급 선순위자(소득 70%이하) 및 우선공급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이상) 만 신청 가능

3. 가구원수 : 신청자 본인 및 태아를 제외한 가구원수 _____명, 태아의 수 ____명

4. 신청자 인적사항 분리배우자도 오른쪽 체크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없음 □
본인		□□□□□□ – □□□□□□□	외국인 배우자 □
배우자		□□□□□□ – □□□□□□□	분리 배우자 □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한 사람 신청불가(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인 경우등)

5.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 기준으로 작성

① 서울시거주기간(서울시 연속거주 시작일자, 만19세 이후) ____년 ____월 ____일
② 신청인이 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1~2인 가구로 거주하는 자(계약자)로서 퇴거를 희망하는자 □
③ 청약저축 횟수_____ 회(공고일전 청약납입회차만 인정) (은행명 :)
④ 신청인이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중 6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
⑥「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
⑦ 사회취약계층 **(공고문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 참조, 두개이상 해당해도 3점)** (자격 :(한가지만 기재)) □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3, 한부모가족 4.국가유공자등 5.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 7.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이외 수급자 (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8. 영구임대주택거주자중 청약가입자

6.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7. 연락가능 전화번호 : ( ) _____-_____

8. 이메일주소 : _____@_____

신청인 본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 소유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장 또는 서명)

[예시2]

우선공급[(예비)신혼부부] 신청용

신정도시마을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 신청유형 : 우선공급 (일반형 39㎡ ■ 복층형 39㎡ □)

2. 세대소득 : · 월평균소득 70% 이하 ■ · 월평균소득 90% 이하 □

※ 우편접수는 일반공급 선순위자(소득 70%이하) 및 우선공급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이상) 만 신청 가능

2-2. [**우선공급**(해당자격 택1) : 신혼부부 ■ , 예비 신혼부부 □]

2-3. [**자격순위**(해당순위 택1) : 1순위 □ : **입주자모집공고일(26. 9. 23.)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 : 혼인기간 중 자녀 출산(임신 중·입양 포함)해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 있는 신혼부부/「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3순위 □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가구원수 : 신청자 본인 및 태아를 제외한 가구원수 1 명, 태아의 수 0 명

4. 신청자 인적사항 분리배우자도 오른쪽 체크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배우자 □
본인	홍길동	9	8	7	6	5	4	–	1	2	3	4	5	6	7	분리 배우자 □
배우자	김을동	9	8	1	2	3	4	–	2	0	1	2	3	4	5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한 사람 신청불가(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인 경우등)

5.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 기준으로 작성

① 서울시거주기간(**서울시 연속거주 시작일자, 만19세 이후**) 2001 년 1 월 1 일
② 자녀의 수(태아포함) 0 명
③ 임신/입양 여부 : 임신 □ 입양 □
④ 청약저축 **횟수**___32__ **회**(공고일전 청약납입회차만 인정) (**은행명** : 우리은행)
⑤ 혼인신고일(신혼부부만 적용) 2001 년 1 월 1 일
⑥ 신청인이 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1~2인 가구로 거주하는 자(계약자)로서 퇴거를 희망하는자 □
⑦ 신청인이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중 6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⑧「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
⑨「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
⑩ 사회취약계층 **(공고문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 참조, 두개이상 해당해도 3점) (자격 :(한가지만 기재) ①)** ■ 1.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3, 한부모가족 4.국가유공자등 5.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시설장추천자 7.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이외 수급자 (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8. 영구임대주택거주자중 청약가입자

•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 10p 참조

6.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도로명주소 기재

7. 연락가능 전화번호 : (010) 1234 - 5678

8. 이메일주소 : sh1234 @ l-sh.co.kr

신청인 본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 소유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 년 9 월 23 일 신청인 : 홍길동 (인장 또는 서명) 반드시 자필서명

우선공급[(예비)신혼부부] 신청용
신정도시마을주택 인터넷신정요정서

1. 신청유형 : 우선공급 (일반형 39㎡ □ 복층형 39㎡ □)

2. 세대소득 : · 월평균소득 70% 이하 □ · 월평균소득 90% 이하 □

※ 우편접수는 일반공급 선순위자(소득 70%이하) 및 우선공급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이상) 만 신청 가능

2-2. [**우선공급**(해당자격 택1) : 신혼부부 □ , 예비 신혼부부 □]

2-3. [**자격순위**(해당순위 택1) : 1순위 □ : **입주자모집공고일(26. 9. 23.)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 : **혼인기간 중** 자녀 출산(임신 중·입양 포함)해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 있는 신혼부부/「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3순위 □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가구원수 : 신청자 본인 및 태아를 제외한 가구원수 ____명, 태아의 수 ____명

4. 신청자 인적사항 **분리배우자도 오른쪽 체크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배우자 □
본인								–								분리 배우자 □
배우자								–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한 사람 신청불가(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인 경우등)

5.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 기준으로 작성

① 서울시거주기간(**서울시 연속거주 시작일자, 만19세 이후**) ____년 ____월 ____일
② 자녀의 수(태아포함) ____명
③ 임신/입양 여부 : 임신 □ 입양 □
④ 청약저축 **횟수**_____ **회**(공고일전 청약납입회차만 인정) (**은행명** :)
⑤ 혼인신고일(신혼부부만 적용) ____년 ____월 ____일
⑥ 신청인이 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1~2인 가구로 거주하는 자(계약자)로서 퇴거를 희망하는자 □
⑦ 신청인이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중 6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⑧「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
⑥「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
⑨ 사회취약계층 **(공고문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 참조, 두개이상 해당해도 3점) (자격 :(한가지만 기재)____)** □ 1.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3, 한부모가족 4.국가유공자등 5.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시설장추천자 7.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이외 수급자 (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8. 영구임대주택거주자중 청약가입자

•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 10p 참조

6.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7. 연락가능 전화번호 : (　　) _____-_____

8. 이메일주소 : _____@_____

신청인 본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 소유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장 또는 서명)

[예시3]

우선공급[한부모가족] 신청용

신정도시마을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 신청유형 : 우선공급 (일반형 39㎡ ■ 복층형 39㎡ □)

2. 세대소득 : · 월평균소득 70% 이하 ■ · 월평균소득 90% 이하 □

※ 우편접수는 일반공급 선순위자(소득 70%이하) 및 우선공급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이상) 만 신청 가능

2-2. [우선공급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6. 9. 23.)현재 2세미만(2세가 되는날 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우선공급 2순위: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 미성년자 자녀수(만 19세 미만) : 태아를 제외한 자녀수 1 명, 태아의 수 1 명

4. 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홍길동	9	8	7	6	5	4	–	1	2	3	4	5	6	7
자녀	김을동	9	8	1	2	3	4	–	2	0	1	2	3	4	5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장 어린 자녀기준으로 적용(태아일 경우는 미기재)

5.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 기준으로 작성

① 서울시거주기간(서울시 연속거주 시작일자, 만19세 이후) 2001 년 1 월 1 일
② 임신/입양 여부 : 임신 ■ 입양 □
③ 청약저축 횟수___32___ 회(공고일전 청약납입회차만 인정) (은행명 : 우리은행)
④ 신청인이 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1~2인 가구로 거주하는 자(계약자)로서 퇴거를 희망하는자 □
⑤ 신청인이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중 6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
⑦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
⑧ 사회취약계층 (공고문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 참조, 두개이상 해당해도 3점) (자격 : (한가지만 기재) ①) ■ 1.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3, 한부모가족 4.국가유공자등 5.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시설장추천자 7.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이외 수급자 (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8. 영구임대주택거주자중 청약가입자

•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 10p 참조

6.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도로명주소 기재

7. 연락가능 전화번호 : (010) 1234 - 5678

8. 이메일주소 : sh1234 @ l-sh.co.kr

신청인 본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 소유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 년 9 월 23 일 신청인 : 홍길동 (인장 또는 서명) 반드시 자필서명

우선공급[한부모가족] 신청용

신정도시마을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 신청유형 : 우선공급 (일반형 39㎡ □ 복층형 39㎡ □)

2. 세대소득 : · 월평균소득 70% 이하 □ · 월평균소득 90% 이하 □

※ 우편접수는 일반공급 선순위자(소득 70%이하) 및 우선공급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이상) 만 신청 가능

2-2. [우선공급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6. 9. 23.) 현재 2세미만(2세가 되는날 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우선공급 2순위: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 미성년자 자녀수(만 19세 미만) : 태아를 제외한 자녀수 _____명, 태아의 수 ____명

4. 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장 어린 자녀기준으로 적용(태아일 경우는 미기재)

5.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 기준으로 작성

① 서울시거주기간(**서울시 연속거주 시작일자, 만19세 이후**) _____년 _____월 _____일
② 임신/입양 여부 : 임신 □ 입양 □
③ 청약저축 **횟수**_____ **회**(공고일전 청약납입회차만 인정) (**은행명** :)
④ 신청인이 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1~2인 가구로 거주하는 자(계약자)로서 퇴거를 희망하는자 □
⑤ 신청인이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중 6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
⑦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
⑧ 사회취약계층 **(공고문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 참조, 두개이상 해당해도 3점) (자격 : (한가지만 기재))** □ 1.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3, 한부모가족 4.국가유공자등 5.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시설장추천자 7.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이외 수급자 (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8. 영구임대주택거주자중 청약가입자

•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 10p 참조

6.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7. 연락가능 전화번호 : ( ) _____-_____

8. 이메일주소 : _____@_____

신청인 본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 소유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장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반드시 아래 [필수]항목에 모두 동의하여야 (☑ 체크) 신청접수 가능하며, 미동의시 신청 불가>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함) - 주소,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등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사회보장급여법」제29조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주택법 제54조의 2에 따른 입주자모집 대행업무 수탁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등을 통해 장기안심주택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전반적인 사항을 대행하는 법무법인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기타 지방공사, LH주거급여사업소,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 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입주자모집 대행업무 수탁자	입주자모집 관련 심사, 계약체결, 상담 및 안내 등	2항 다목에 따른 항목 (기본·소득·자산·기타 내역)
서울특별시	주택소유현황, 세대원정보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기타 지방공사	임대주택 중복 입주여부 확인 및 예비입주자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당첨내역
LH주거급여사업소	주거급여대상자 확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약내역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등 우편발송	성명, 연락처, 주소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신청자 성명 _____ 연락처 010-_____

202 .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